

대구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나201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나20156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 10. 22 선고 2014가단273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 선고 2015. 7. 9.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 10. 22. 선고 2014가단273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피고는 원고의 맏며느리로서 원고의 장남인 F의 처이다.
- 2) 원고는 의성농업협동조합 북부지점에서 피고의 명의로, 2013. 3. 25. 1,000만 원(계좌번호 C, 만기 2014. 3. 25.), 2013. 7. 1. 530만 원(계좌번호 D, 만기 2014. 7. 1.) 및 470만 원(계좌번호 E, 만기 2014. 7. 1.)을 각 정기예탁한 후 그 통장을 보관하여 왔다.
- 3) 그런데 피고는 2014. 1. 6. 의성농업협동조합 남부지점에서 위 각 계좌에 관한 통장분실 신고를 하면서 위 각 정기예탁을 모두 중도해지한 후 원금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예탁금'이라 한다) 및 이자 110,802원을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의성농업협동조합 남부지점장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가 보유한 돈이 이 사건 예탁금의 출처인 점, 피고가 원고의 며느리인 점, 이 사건 예탁금에 관한 통장을 원고가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예탁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원고 소유의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각 계좌를 해지한 후 이 사건 예탁금을 인출함으로써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예탁금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예탁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예탁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반증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¹⁾.
나. 나아가 피고는, 피고의 남편 F이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증여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F에게 원고 소유의 경북 의성군 G 전 1,709㎡를 증여하기로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위 토지에 관한 증여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와 F이 원고를 오랫동안 봉양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그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항변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기현

판사배지호

판사김선희

1) 피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증여를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